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839
------	------

2024. 06. 26.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05월 27일, 김동욱 의원(찬성자 28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05월 3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4.06.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동욱 의원)

### 가.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 개정('23. 9. 22. 시행)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청년 의무 위촉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약칭 등 일부 조문의 수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가. 청년기본법령에 따라 위원회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10분의 3 이상으로 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적용을 제외함(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 Ⅲ. 검토의견 요약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2023.9.22.시행)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청년 의무 위촉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약칭 등 조문의 형식상 오기를 수정하기 위해 발의됨.

#### 나. 「청년기본법」 관련 규정 및 서울시 각종 위원회 현황

- 지난 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하면서 적용 위원회 및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 이러한 「청년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되어(2022.3.10.),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sup>1)</sup> 253개 중 청년 위촉 의무가 없는 위원회는 51개이며, 위촉직 청년 위원의 비율이 10% 미만인 위원회는 51개임(참고자료 3).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그 후 2023년 3월에는 청년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10분의 1 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등은 10분의 3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음(개정 2023.3.21, 시행 2023.9.22.).

###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정위원회
2.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 나.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
2.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비율
3. 그 밖의 위원회: 10분의 1 이상

## 다. 개정안의 검토

- 안 제8조제5항은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청년 위촉 의무와 위촉 비율을 규정한 것임.

현행	개정안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p> <p>⑤ <u>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u></p>	<p>제8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현행과 같음)</p> <p>⑤ <u>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u></p>

- 즉 현행 조례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대상으로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범위를 전체 위원회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10분의 3 이상을 위촉하도록 규정함.
- 이는 「청년기본법」 개정(2023.9.22. 시행)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의 청년 위촉 관련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개정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 등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지난 2023년 3월 21일에 개정되고 같은 해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상당 시간 지연되었는바, 이러한 입법의 지연은 시민에게 법적 상이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39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김동욱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칠성,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이상욱,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28명)

## 1.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 개정('23. 9. 22. 시행)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청년 의무 위촉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약칭 등 일부 조문의 수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청년기본법령에 따라 위원회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10분의 3 이상으로 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적용을 제외함(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을 “서울특별시 소속”으로, “관한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시”를 “시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 및”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 시와”를 “따라 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 할”을 “위촉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1.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제10조제3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달성하는데”를 “달성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장여부”를 “연장 여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 위촉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소속</u> ----- ----- ----- <u>필요한</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총괄부서”란 <u>서울시</u>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p> <p>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시 소속</u> ----- ----- -----</p> <p>4.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본원칙) ① <u>시장 및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u>(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p>	<p>제3조(기본원칙) ① <u>서울특별시 시장,</u> ----- ----- ----- ----- ----- -----</p>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 (생략)

②·③ (생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범위) -----  
----- 따라 시,-----  
-----.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  
-----  
-----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요건-----  
-----.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서울특별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  
-----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 ⑧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 략)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  
례」 제49조에 따른 관계 공무  
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

루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  
원회로서 시 청년정책조정위원  
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1.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  
련되는 위원회
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  
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  
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  
례」 제49조-----  
-----  
-----

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 개최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의결기한 등으로 회의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총괄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연장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  
-----  
----- 회의개  
최-----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달성  
하는 데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연장 여부-----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10분의 3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정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손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 추계 대상이 아님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